



SEMYUNG CHA

RECHTSANWÄLTIN · GERMAN ATTORNEY AT LAW

MANDANTENINFORMATION

독일 포장법(VerpackG / VerpackDG) 안내

직수입·판매 사업자를 위한 의무 정리 및 실행 지침

I. 출발점 — '제조자'의 정의

독일 포장법상 '제조자(Hersteller)'는 포장을 생산하는 자가 아니라, 독일에서 상품이 담긴 포장을 **처음 영업 목적으로 유통하는 자(최초 유통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독일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상 그 수입 상품의 제조자로 간주됩니다. 한국 제조사는 독일에서 유효하게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의무는 국내 수입자에게 귀속됩니다.

II. 세 가지 기본 의무

1. 등록 (Registrierung · LUC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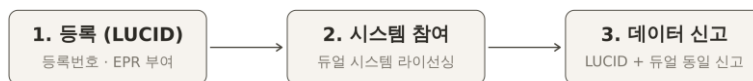
- 유통 전 ZSVR의 포장 등록부 LUCID에 등록.
- 완료 시 등록번호(= EPR 번호) 부여. 시스템 참여 대상/비대상 포장 사용 여부를 함께 신고.

2. 시스템 참여 (Systembeteiligung · 라이선싱)

- B2C 최종소비자에게서 폐기물로 발생하는 포장은 듀얼 시스템과 계약 체결 필요.
- 이로써 비로소 포장이 '유통 가능' 상태가 됨. 소량은 저비용 소량 요금제 활용 가능.

3. 데이터 신고 (Datenmeldung)

- LUCID와 듀얼 시스템에 동일하게 신고. 연말 정산 물량신고는 **다음 해 5월 15일**까지.
- 소량인 경우 감사받은 '완전성 확인서(VE)'는 대개 면제 — 다만 기본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세 의무는 순차적으로 쌓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

세 가지 기본 의무의 순차 흐름

유의: 최소 물량 면제 기준은 없습니다. 판매 첫 단위부터 등록·라이선싱 의무가 발생하며, 소량은 '의무 면제'가 아니라 '낮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III. 포장 유형이 의무 범위를 결정한다

B2B, B2C 제품 분류에 따라 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B2C 부분만 라이선싱·물량신고 대상이며, B2B 부분에는 자체 회수·재활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SEMYUNG CHA

RECHTSANWÄLTIN · GERMAN ATTORNEY AT LAW



B2C / B2B 의무 판별 흐름

IV. 실행 지침 — 권장 순서

1. LUCID 등록 — 상호·법적 형태·대표자·상업등기번호·브랜드명 준비. 15~20 분 소요, 등록번호(EPR) 수령.
2. 듀얼 시스템 계약(라이선싱) — B2C 포장 대상. 등록번호를 듀얼 시스템에 연동해 데이터 대조. 소량 요금제 활용.
3. 물량 신고 — LUCID·듀얼 시스템에 동일하게. 당해 계획 물량 + 다음 해 5 월 15 일까지 정산.
4. 소급 처리 — 이미 판매된 B2C 포장은 소급 라이선싱·신고 대상. 조기에 듀얼 시스템과 조율.
5. B2C/B2B 구분 — 사적 소비자 도달 물량 비율 산정. B2C 만 라이선싱, B2B 는 자체 회수·재활용.

VI. 핵심 요약

- EU 포장규정(PPWR)과 이를 시행하는 독일 포장법 시행법(VerpackDG)은 2026 년 8 월 12 일부터 적용되어 기존 포장법(VerpackG)을 대체합니다. 다만 세 가지 기본 구조(등록 → 시스템 참여 → 데이터 신고)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며, 다만 더 정밀하고 엄격하게 강화됩니다.
- 제조자로서의 등록·참여·신고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 B2C 포장은 등록 + 라이선싱 + 물량신고가 모두 필요하며, 소량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순수 운송포장은 등록과 자체 회수·재활용 의무만 적용되며, 듀얼 시스템 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